■ 민족문화연구 제94호(2022.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19-151.
http://doi.org/10.17948/kcs.2022..94.119

고려 무신집권기 '復政于王' 명분의 등장과 都房의 변화

홍민호(洪旻湖)*

목 차

1. 머리말
2. '復政于王' 명분의 등장과 김준의 입장
3. 김준・임연 집권기 도방 동원 방식과 그 함의
4. 맺음말

국문초록

도방은 무신 집정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호위・활용을 위해 창설한 사병집단이다. 무신 집정에게 있어서 도방은 본인들의 전유물이었으며, 이는 도방이 무신집권기를 통틀어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이다.

무오정변을 주동한 인물 중 하나인 김준은 자신이 무신집정이 되지 않으면 도태될 우려가 있는 입장이었다. 그리하여 정변 직후 정권을 잡았던 유경을 축출하고 무신 집정이 되었다. 하지만 본인은 '復政于王'의 기치를 통해 성장한 인물이며, 그 스스로도 충분히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무신집정과 '復政于王' 명분 사이의 딜레마에 놓인 김준은 결국 온전히 도방 관련 권한을 환수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는 국왕에 의해 동원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모습은 임연 집권기에도 이어졌다. 전대 최씨 무신 집정의 확고한 집권 체제에 가해졌던 형식적 균열이었다. 결국 무오정변 당시 등장했던 '復政于王'의 명분은

*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수료.

‘쇠퇴기’의 무신 집정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물론 실제로 당시 국왕이 도방을 자유로이 활용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온전하게 김준・임연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국왕에 의해 發命될 수 있었다. 결국 무신 집정의 사적 체제 운영에도 굴곡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주제어: 復政于王, 都房, 김준, 임연, 통수권, 발명권.

1. 머리말

軍令의 지엄함은 군에 대해 통시적으로 강조되는 요소의 하나로, 고려시대에도 다르지 않았다. 이는 곧 승패와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1] 따라서 군령이 전달되는 과정을 살피는 것은, 군사집단의 속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사적인 무력 조직에도 그 지엄함은 적용되기 마련이다. 물론 자료상 그 하부의 세세한 군령 체계의 움직임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지만, 상대적으로 통수권자의 존재는 확연히 드러난다. 그리고 그 통수권자가 군령 체계를 확고히 할 수 없다면, 해당 사적 무력 조직의 운영에는 굴곡이 생긴다.

고려는 1170년(의종 24) 무신정변을 겪는다. 그리고 이는 고려에 있어 변곡점으로 작용하여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정권을 차지한 집정들은 자신들이 중심이 된 통치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이 시기의 私兵[2] 집단은 그 장치 중 하나였다. 그들의 직접적인 안위를 보장하는 사병은 무신 집정의 집권 구조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소였다. 그 구성원은 惡少・死士・勇士・壯士・將士・家僮・家奴 등으로 표현되고

1) 『高麗史節要』 권7, 睿宗 1년 7월.

2) 고려시대 ‘公’의 개념은 公平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조정・국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私’는 개인의 영역에 해당하였다. 고려시대에 이 두 개념은 완연한 대립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도의적인 배반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李相國, 「고려~조선초 공・사전의 개념과 王土思想」, 『大東文化硏究』 85, 대동문화연구원, 2014, 501-507면). 위의 개념을 軍에 적용하면 조정・국가의 군대는 곧 국왕이 통수권을 가지고 지휘하는 官軍이 된다. 그리고 통수권이 국왕이 아닌 개인에 귀속되어 있는 軍은 ‘私兵’으로 지칭할 수 있다. ‘公’・‘私’의 개념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 한정해서만 사용하였다.

있으며, 무신 집정들은 사병을 양적으로 확대시켜 都房과 같은 '軍隊'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군령 체계의 최상위에 무신 집정 자신들을 위치시키고, 이를 활용하면서 정국을 주도해 나갔다.

무신 집정을 호위하는 집단이었던 도방은 해당 시기의 시대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대개 도방이 무신 집정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군사 기반이었다고 파악하거나,[3] 혹은 '家奴(家兵)' 집단에 비해 실제 도방의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는 견해[4]로 양분되었다. 그리고 도방과 家兵(家奴)은 서로 구분되는 집단이 아니었다는 연구[5]도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무신 집정들의 권력 기반과 활용 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개 무신집정과 도방원의 인적 관계, 도방의 역할과 구성, 규모의 변화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처음 도방이 조직되는 경대승 시기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최충헌 집권기에 한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상대적으로 김준・임연 정권의 도방은 논의의 초점에서 벗어난 채 그 연장선에서만 이해되고 있다.

무신정권기는 대개 세 시기로 나누어 파악되고 있다.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무신정변의 발발부터 이의민 집권기까지를 '성립기', 최충헌 이후 최씨 무인 집정기까지를 '확립기', 김준 이후 무신 정권의 종말까지를 '쇠퇴기'로 분류하고 있다.[6] 본고는 이 중 무신정권의 '쇠퇴기'를 대상으로,

---

3) 金庠基, 「高麗武人政治機構考」, 『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1948 ; 閔丙河, 「崔氏政權의 支配機構」,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편, 국사편찬위원회, 1973 ; 『高麗武臣政權研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0 ; 旗田巍, 「高麗武人の政權爭奪の形態と私兵の形成」,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上, 吉川弘文館, 1978 ; 金塘澤, 「武臣政權時代의 軍制」,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軍史硏究室 編, 陸軍本部, 1983 ; 金塘澤, 「崔氏政權과 그 軍事的 基盤—都房・夜別抄・神義軍 조직의 政治的 背景—」, 『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社, 1987 ; 『高麗의 武人政權』, 國學資料院, 1999.

4) 洪承基, 「崔氏武人政權과 崔氏家의 家奴」, 『高麗貴族社會와 奴婢』, 一潮閣, 1983 ; 柳昌圭, 「崔氏武人政權下의 都房의 設置와 그 向方」, 『東亞硏究』 6, 동아연구소, 1985 ; 『高麗武人政權研究』, 洪承基 外, 서강대 출판부, 1995 ; 柳昌圭, 「사병의 형성과 도방」, 『(신편)한국사』 18, 국사편찬위원회 편, 국사편찬위원회, 1993.

5) 전경숙, 「高麗 崔氏執權期의 都房」, 『韓國學硏究』 7, 숙명여대 한국학연구소, 1997.

6) 金庠基, 앞의 글, 1948 ; 邊太燮, 「高麗後期의 武班에 대하여」, 『서울大論文集』 12, 서울대, 1966 ; 『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 1971 ; 邊太燮, 「武臣亂과 崔氏政權의 成立」, 『한국사』 7, 국사편찬

도방의 통수권과 동원 방식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戊午政變[7] 이후 등장한 '復政于王'의 명분이, 무신 집정의 대표적 기반이었던 도방의 군령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고가 '쇠퇴기' 무신 정권의 기반을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을 제공하길 기대한다.

2. '復政于王' 명분의 등장과 김준의 입장

1) 유경의 집권과 '復政于王'의 실현

1258년(고종 45) 3월, 大司成 柳璥과 別將 金仁俊(金俊)은 당시 무신 집정이자 '大失人心' 했던 최의를 제거하고자 모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계획이 누설되어 李柱・崔文本・庾泰・朴暹・兪甫 등에 의해 최의에게 알려지긴 했지만, 빠르게 계획을 변경하여 결국 최의를 주살하는데 성공한다.[8] 정변의 성공으로 60여 년을 이어 오던 최씨 집정들의 정권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정변의 주도자들은 국정을 왕에게 되돌리는[復政于王] 조치를 취했다.[9] 고종은 그들의 공을 치하하며 못내 눈물을 보였다.[10]

이른바 무오정변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崔竩와 家奴들의 결합관계가 느슨해졌던 것에서 이유를 찾기도 하고,[11] 최씨정권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서[12] 몽골과의 和議를 주장하는 이들과 김준 등이 연대하여 일어난 사건이라 보기도 한다.[13] 세부적인 논의는 차이

위원회 편, 국사편찬위원회, 1984 ; 朴龍雲, 『(수정・증보판)고려시대사』, 일지사, 2008.

7) 김준 등의 주도로 일어난 일련의 정변을 '戊午政變'으로 지칭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許興植, 「1292년 尙書都官貼의 分析(上)」, 『韓國學報』 27, 일지사, 1982, 20면), 이는 비교적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한다.

8)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5년 3월.

9)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5년 3월 丙辰.

10) 『高麗史』 권105, 列傳18 柳璥.

11) 洪承基, 「崔氏武人政權과 崔氏家의 家奴」, 『高麗貴族社會와 奴婢』, 一潮閣, 1983.

12) 金塘澤, 「崔氏政權의 崩壞」, 앞의 책, 1987 ; 앞의 책, 1999 ; 金大中, 「崔竩政權의 武力基盤解體와 沒落」, 『朴性鳳敎授回甲紀念論叢』, 慶熙大史學論叢刊行委員會 編, 慶熙大學校 出版局, 1987.

13) 鄭修芽, 「金俊勢力의 形成과 그 向背 : 최씨무인정권의 붕괴와 관련하여」, 『東亞硏究』 6, 동아연구소, 1985 ; 『高麗武人政權硏究』, 洪承基 外, 서강대 출판부, 1995 ; 姜在光, 「崔氏家 家奴출신 政治人의 役割과 戊午政變의 性格」, 『韓國史硏究』 127, 한국사연구회, 2004.

를 보이고, 본고의 초점에서 벗어나기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구성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무오정변은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세력들이 김준과 연대했으며, 최씨 정권의 종말을 기도했던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14]

정변 발생 이후, 그와 관련된 이들은 전면에 대두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연대'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세력 간의 협의를 통해 정치를 전개해야 하는 국면이 나타났다. 후대에 집정이 되는 김준 역시 주변 세력의 의향을 중시하며, 협치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15] 이러한 국면에서 가장 먼저 일선에 대두했던 인물은 정변을 이끌었던 유일한 文班인 柳璥이었다. 정변 주동자들은 주로 무관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국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은 유경이 유일했다.

유경의 주도아래, 정변 직후 정권의 수습이 이루어졌다.[16] 이전 시기 국정을 주도했던 최씨 집정들의 정통성을 부정함과 동시에 '復政于王'을 기치로 정변을 일으켰으므로, 수반되어야 할 작업은 국왕 중심의 정국 운영 체제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유경은 그에 따라 여러 작업들을 수행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한다.

A1) 都兵馬宰樞所에서 아뢰기를, "공신인 유경・김인준・박희실・이연소・김승준・박송비・임연・이공주 등은 충의를 떨쳐 일어나, 왕실을 재건하고 삼한을 바로 잡았으니 그 공은 마르고 닳도록[帶礪] 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단계를 넘어 관작을 올려주었지만 공적에 대한 보답이 충분치 못합니다. (…) 최충헌과 같이 죄가 차고 악이 쌓였거나 최이와 같이 권력을 전횡하고 명을 천단했다면 의당 초상을 떼어 낼 것이며 묘정에 배향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따랐다.[17]

---

14) 무오정변의 발발 원인을 다룬 이들 견해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무오정변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방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15) 鄭修芽, 앞의 글, 1985 ; 앞의 책, 1995, 304면 ; 강재광, 「金俊勢力의 形成과 金俊政權의 三別抄 改編—高麗武人執權期 金俊政權 硏究(一)—」, 『한국중세사연구』 36, 한국중세사학회, 2013, 247면.

16) 본고에서는 유경이 김준에게 축출되기 전까지 보인 행적을 중심으로 '復政于王' 명분과의 관련성을 살핀다. 유경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강재광, 「고려 후기 문신 유경(柳璥)의 정치활동 연구—유경과 무인집정・문신・국왕과의 정치적관계를 중심으로—」, 『韓國史硏究』 193, 한국사연구회, 2021.

17)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5년 7월 乙亥. "都兵馬宰樞所奏, 功臣柳璥金仁俊朴希實李延紹金承俊朴

A2) 김인준과 유경이 이주・최문본・유태・박선・유보 등을 베기를 청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이들은 사리에 밝지 못해 오직 눈앞의 이익만 도모했으니, 어찌 대의를 알았겠는가. 용서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경들의 청이 있으니, 유배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유경 등이 굳게 청하자, 왕이 이르기를, “반드시 죽이려고 한다면 어째서 다시 나한테 알리는가. 경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하고, 이에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유경 등이 땅에 엎드려 사죄하고, 마침내 이주 등을 섬에 귀양보냈다.[18]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당대 세력들에게 공통의 목적은 최씨 집정의 제거였다. 때문에 정변 직후 최씨 집정들에 대한 부정과 함께, 그들에게 책임 지우는 작업은 필히 요구되었다. A1은 정변이 일어난 지 4개월여가 지난 시점의 일로, 도병마재추소의 건의이다. 무오정변의 공신세력들에 대한 예우를 더해달라는 내용이 주류인데, 작위의 수여・토지 및 노비의 지급・후손의 대우・공신각에 대한 壁上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말미에 최충헌・최우의 초상을 탈거하고, 차후에라도 묘정에 배향되지 않도록 건의하고 있다. 당시 ‘정사를 되돌려받은’ 국왕인 고종에 의해 이러한 사안들이 승인되면서, 결국 최씨가는 죄와 악이 가득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천단한 이들임이 ‘공인’되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씨 일족에게 협조했던 이들을 처벌하는 작업 역시 이루어졌다. A2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주・최문본・유태・박선・유보 등은 유경 등이 무오정변을 계획・실행하는 단계에서 최의에게 그 전말을 밀고하였다. 때문에 그들에 대한 처벌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이 때 보인 고종의 행보가 이전 시기와 달리 조금 이색적인데, 고종은 이들에 대한 사형을 면해주고 있다. 물론 국왕의 위상에 대해 절대적인 변화가 수반되지는 않았겠지만, 국왕을 향한 기치를 내건 상황에서 고종의 의중을 고려해야만 했던 당시 정

松庇林衍李公柱等奮擧忠義, 再造王家, 匡正三韓, 帶礪難忘. 雖超授爵秩, 不足以酬答. (…) 若崔忠獻罪盈惡稔, 崔怡專權擅命, 宜削去圖畵, 罷廟庭配享. 從之.”

18)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5년 4월. “金仁俊柳璥, 請誅李柱崔文本庾泰朴瑄兪甫等. 王曰, 此輩狂惑, 惟圖目前, 何知大義. 赦之可也. 然卿等有請, 可流之. 璥等固請, 王曰, 必欲殺之 , 何更聞爲. 卿等可自爲之, 乃起入內. 璥等伏地謝罪, 遂流柱等于島.”

변 주동자들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19] 그리고 결국 고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밀고자들을 처벌하며 후환을 제거하였다.

이와 함께, '復政于王'의 실제적인 조치도 수반되었다. 이 중 무신집정의 군사적 기반에게 나타난 모습들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 외에도 취해진 조치들이 있었는데, 인사권과 관련한 것이었다.

B1) (고종 45년) 유경은 최의를 주살하고 (왕에게) 주하기를 "政房을 便殿 곁에 두어 銓注를 관장하고 국가의 機務를 모두 의결하게 하십시오." 하였다.[20]

B2) 승선 유경이 허공・최녕・원공식을 천거하여 모두 내시에 소속시키고 정사점필원을 삼으니, 당시에 정방 3걸이라 불렀다.[21]

B3) 무오년에 이르러 권신들이 쓸려나가고 정사가 왕실로 돌아가자[復政王室] 문사(文士)를 뽑아 정당(政堂)에 들였다. 공은 그때 아직 급제하지 못했으나 문재와 행정능력[吏幹]에서 (그에) 미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선발에 포함될 수 있었다.[22]

B4) 공의 이름은 원부이고, 처음 이름은 원공식이며, 자는 성지이고, 자호는 족헌수재이다. (…) 무오년 4월 의사들이 모여 권세가를 쓸어버릴 것을 모의하였고 정사를 대내로 회복시켰으니[復政大內] (공이) 뽑혀 정당에 들어갔다.[23]

주지하듯이 최이는 정방을 설치하고, 인사권을 전단하였다. 군사권과 함께, 인사권은 최씨 무신 집정이 보유한 권한 중 가장 큰 두 축이었다. B1은 그러한 인사권을 국왕의 영역인 편전으로 환속하는 조치였다. 정방을 혁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온전히 고려 전기의 인사 행정 방식으로 복구했다고 볼

19) 강재광 역시 해당 사료를 언급하며 '고종의 왕권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던 것'이라 평하였다(강재광, 앞의 글, 2013, 242면).
20) 『高麗史』 권105, 列傳18 柳璥. "璥旣誅竝, 奏置政房于便殿側, 掌銓注, 凡國家機務, 皆決焉."
21) 『高麗史』 권105, 列傳15 許珙. "承宣柳璥薦珙及崔寧元公植, 並屬內侍, 爲政事點筆員, 時號政房三傑."
22) 「許珙墓誌銘」. "及戊午歲, 權臣掃迹, 復政王室, 簡文士入政堂. 公時猶未第, 以文才吏幹, 無能及者, 得居是選." 이하의 묘지명 자료는 모두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제5판)』, 한림대 출판부, 2012에서 인용하였다.
23) 「元傅墓誌銘」. "公諱傅, 始名公植, 字成之, 自號足軒秀才. (…) 戊午四月, 義士聚謀掃權門, 復政大內, 選入政堂."

수는 없겠지만, 인사권을 국왕의 사유로 돌려서 왕권을 뒷받침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24] 충분히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조치이다.

허울뿐인 개편에 그치지 않고, 유경은 정방의 내적 쇄신 역시 추구했다고 생각된다. B2~B4는 당시 정방원의 인선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B2에서 확인되듯, 당시 '정방 3걸'이라 불렸던 허공・최녕・원공식은 모두 유경의 천거로 정방의 일원이 되었다. B3・B4는 그 중 허공과 원공식의 묘지명이다. 모두 무오년에 정사를 회복시킨 것[復政]이 원인이 되어, 묘지명의 주인이 정방에 발탁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復政于王'의 명분이 당대 활용되었다는 점과 함께, 그 기치 아래 국정의 정비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유경이 등용하여 정방에 들어간 인물 가운데 허공의 행적은 특히 주목된다. 허공은 이후 임연이 임유무를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 하자, 허공은 원종까지 나서서 회유함에도 불구하고 임연이 '賊臣之家'라는 이유로 끝까지 그 혼사를 거절했던 인물이다.[25] 사람을 보는 안목이 좋다고 평가되었고, 원칙주의자적 면모가 나타나는[26] 유경이 어떠한 유형의 이들을 발탁하고 활용하여 국정을 운영하고자 했는지 간취할 수 있다.

일련의 조처를 통해 '復政于王' 명분을 실현시킨 유경은,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는데도 정치적으로 그 조처들을 충분히 활용했다. 다음은 그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C1) (고종 45년) (유경을) 樞密院右副承宣에 임명했다가 얼마 뒤에 知奏事・左右衛上將軍으로 옮기게 했다. 그러나 유경은 근래 지주사가 되었던 자들이 거의

24) 金昌賢, 「고려후기 政房의 구성과 성격」, 『韓國史硏究』 87, 한국사연구회, 1994 ; 『高麗後期 政房硏究』, 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98, 41면.

25) 『高麗史』 권105, 列傳15 許珙.

26) 유경은 그의 전기에서 선천적인 자질 자체가 명민하고 도량이 웅대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고려・몽골 전쟁을 겪던 시기 入保는 국익과 관련된다 하여 주민의 뇌물을 거절하는 강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 조정에 돌아온 뒤 충렬왕대에는 본래 자신보다 반차가 낮았던 元傅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우대를 사양하며 판군부사가 二宰, 판판도사사가 三宰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람보는 안목이 있었으며[有藻鑑] 과거를 주관할 때 체제가 먼저 갖추어졌는지를 보고 기교의 여부를 나중으로 하였음이 특기되고 있기도 하다(『高麗史』 권105, 列傳18 柳璥).

모두 權臣이었고, 또 총애와 녹봉이 분수에 넘을 것을 두려워해 극력 사양했다.27)

C2) 김승준과 임연 등 공신들이 시기하여 김준에게 참소하였고, 국왕에게 간해졌다. 왕은 그 권력을 빼앗고자 유경을 承宣에서 파직하고 簽書樞密院事를 제수하였다. 유경과 친했던 將軍 禹得圭·梁和, 指諭 金得龍, 郎將 慶元祿은 하옥하였다.28)

C1은 무오정변 직후 유경의 관력을 보여준다. 樞密院右副承宣에 제수되었던 유경을 知奏事로 옮기려 하자, 유경은 權臣이 맡았던 자리라는 이유로 사양하고 있다. 이는 최씨 집정들에게 책임을 지웠던 본인의 행보와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즉, 전대의 집정들처럼 되지 않겠다는 시의적절한 명분을 바탕으로 당시 인사권을 쥐고 있던 추밀원우부승선을 유지한 것이다. 이후 C2를 보면, 유경을 실각시킬 때 내려진 조처는 승선직 박탈이었다. 당시 승선직은 정방을 통해 銓注權을 행사할 수 있었다. 즉, 인사행정에 있어 실권을 쥘 수 있는 자리였다. 때문에 유경에 대한 이 인사는 김준에게 있어 유경을 재상으로 승진시키는 명목으로 승선직을 파해 실권을 빼앗는, 名과 實을 모두 살린 조처였다.29) 때문에 C2 직전까지 유경이 명분의 활용을 바탕으로 승선직을 유지하면서 어떠한 권한을 향유하였는지 알려주고 있기도 하다.

유경은 '復政于王'의 기치 아래 정방을 활용해 자신의 권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 유형의 인물들을 들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유경이 도방 등을 활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 C1에서 '權臣 이미지'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도 사적인 무력

27)『高麗史』권105, 列傳18 柳璥. "卽拜樞密院右副承宣, 俄遷知奏事左右衛上將軍. 璥以近來爲知奏者率皆權臣, 又恐寵祿盛滿, 力辭."

28)『高麗史』권105, 列傳18 柳璥. "承俊林衍等諸功臣忌之, 譖于俊, 諷王. 王欲奪其權, 罷璥承宣, 除簽書樞密院事. 囚璥所善將軍禹得圭梁和, 指諭金得龍, 郎將慶元祿."

29) 朴龍雲, 「高麗時代의 中樞院에 대한 고찰」, 『高麗時代 中樞院 硏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院, 2001, 29면. 다만 이러한 조치를 내렸던 이유는 고종과 유경이 불화를 겪었던 탓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이미 김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 달리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유경에게 승선직은 빼앗았지만 오히려 직이 올라갔다는 점이나, 후술하겠지만 고종과 유경이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집단을 활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만 C2에서 將軍 禹得圭·梁和와 指諭 金得龍, 郎將 慶元祿 등이 유경과 친한 이들로 언급되고 있다. 자신만의 어떠한 조직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유경은 위와 같은 일부 무신들을 가까이하는 방식으로 무력적 발판을 조성하였다.[30] 대의명분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권력의 틀을 마련한 유경은 다른 공신 세력을 의도적으로 억제해가며,[31] '復政于王' 정국을 지켜나갔다.

유경이 택한 이러한 방식은 본인에게도 유리했다. 우선 유경은 당시 국왕이었던 고종과 긴밀한 관계였다. 고종이 병세가 위중해지자 찾았던 곳은 다름 아닌 유경의 집이었고[32] 그곳에서 2개월여를 지내다가 승하하였다.[33] 고종이 유경에게 느꼈던 친연성의 정도를 엿볼 수 있는 지점인데, 그렇다면 고종의 권위를 높여줄수록 유경에게도 유리했다. 또 유경은 문반 출신이었기에 전대의 무반 출신 집정들과 쉽게 거리를 둘 수 있었다. 실제 유경은 C1과 같은 명분을 활용하기도 하고, 교정별감 등 무신집정이 차지했던 직위들에 오르지도 않았다. 최씨 정권에 대한 불만을 바탕으로 등장한 '復政于王' 명분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수호하는 것이 적어도 고종과 유경 양자에게는 호혜적이었다.

2) '復政于王' 명분과 김준의 딜레마

유경과는 달리, 무오정변을 주도한 또 다른 주체인 김준은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 김준은 그의 기반이 탄탄하지 못했다. 최의를 주살하는 과정에서 뜻을 함께했던 衛社功臣들은 그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김준을 중심으로 결집할만한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김준은 온전히 권력을 잡지 못하고 주변 세력의 의향을 주시하며 협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34] 그의 출

30) 강재광, 앞의 글, 2021, 89면.
31) 鄭修芽, 앞의 글, 1985; 앞의 책, 1995, 305면.
32)『高麗史』권24, 世家24 高宗 46년 4월 辛卯.
33)『高麗史』권24, 世家24 高宗 46년 6월 壬寅.
34) 鄭修芽, 앞의 글, 1985 ; 앞의 책, 1995, 304면 ; 강재광, 앞의 글, 2013, 247면.

신을 고려하더라도 김준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최씨 집정들이 가졌던 권한을 쥐지 않을 경우 오히려 도태될 수 있었다.[35]

1258년 11월, 결국 김준은 유경 일당을 축출하는데 성공했다.[36] 이어서 정적들을 제거했고, 무신 집정들의 필수적인 직책이자 세습적 직책이었던 교정별감[37]을 차지하였다.[38] 그리고 김준은 海陽侯에 봉해졌다.[39] 이는 晉陽侯, 즉 최충헌의 故事에 의거한 것이었다.[40] 하지만 김준은 최씨 정권의 직속 후계자가 아니었기에 그만큼의 결속력을 갖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무오정변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이므로 그는 '復政于王'의 명분과 직접 결부되어 있었다. 김준에게 있어 '復政于王'은 버릴 수 없는 기치였다. 해당 명분으로 집권했기에 이를 포기한다면 자신이 권력을 쥐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다음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D1) 장군 박희실・조문주 산원 박천식을 몽골에 보냈다. 다루가치에게 청하기를, "본국이 정성으로 섬기는데 미진했던 것은, 단지 권신이 멋대로 정권을 휘두르면서 내속하는 일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권신 최의가 이미 죽었으니 즉시 섬[水]을 나와 육지로 가서 상국의 명을 받들고자 하는데, 상국의 군대가 경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치 쥐구멍을 고양이가 지키는 것과 같으니 감히 나갈 수 없을 뿐입니다." 하였다.[41]

D2) (고종 46년) 삼가 생각건대 고려[小邦]에는 일찍이 병권을 잡은[統兵] 권신이 있어 오래도록 國事에 병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나라 안을 지휘하니 스스로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받드는 사이사이에 자못 어긋난 것이 많았습니다. (…)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이러한 뜻을 밝게 헤아려주시고 그 말을

35) 鄭修芽, 같은 글 ; 같은 책, 305면.
36)『高麗史節要』권17, 高宗 45년 11월.
37) 閔丙河, 앞의 책, 1973 ; 앞의 책, 1990, 81-86면 ; 邊太燮,「高麗後期의 武班에 대하여」,『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 1981, 417면.
38)『高麗史』권26, 世家26 元宗 5년 8월 乙巳.
39)『高麗史』권26, 世家26 元宗 6년 10월 庚午.
40)『高麗史』권130, 列傳43 叛逆4 金俊.
41)『高麗史』권24, 世家24 高宗 45년 12월 甲辰. "遣將軍朴希實趙文柱散員朴天植, 如蒙古. 請達魯花赤曰, 本國所以未盡事大之誠, 徒以權臣擅政, 不樂內屬故爾. 今崔竩已死, 卽欲出水就陸, 以聽上國之命, 而天兵壓境. 譬之穴鼠爲猫所守, 不敢出耳."

살펴 받아들여주시고 다시 소국을 보살피는 은혜를 더하셔서 충성의 직분[輸忠之職]을 따르고 본받게 하소서.42)

D3) (고종 45년) 유경이 김준에게 말하기를, "공은 처음에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의를 받들어 정사를 왕실로 되돌렸다. 친하기가 骨肉과 같으므로 참소하길 잘하는 자도 이간할 수 없었다. 어찌 오늘날 도리어 이같을 줄 생각했겠는가?"라고 하였다. 김준이 부끄러워 사과하였고, 김승준과 임연 등은 말이 없다가 물러났다.43)

D4) (원종 4년) 왕이 환국하니 그를 侯로 봉하고 府를 세워주고자 하여 제를 내리시길, "叅政 김준은 우리 선왕을 섬기면서 권신을 주살하고 정권을 왕실로 되돌렸으며 과인의 옹립을 도와 宗祀가 받들고 이어지게 하였으니 공로와 업적의 상대함이 천고에 빼어나도다. (…)" 하였다.44)

정권을 잡은 직후의 김준은 그 기반의 안정을 위해, 몽골의 압박에서 우선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몽골과의 강화에 사활을 건 상황이었다.45) 그리고 D1에 등장하는 박희실・조문주는 국왕 고종과의 직・간접적 연계를 보이는 특사였다.46) 특히 박희실은 親蒙的 무신집단 혹은 勤王派로 분류되고 있으며, 수차례 몽골에 파견된 바 있었다.47) 김준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42)『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6년 4월 甲午. "竊念, 小邦嘗有統兵之權臣, 久專提兵於國事, 落此指揮之內, 不自制焉. 故於應奉之間, 頗多違者. (…) 伏冀, 陛下炤諳此意, 采納其言, 更加字小之恩, 俾效輸忠之職."

43)『高麗史』 권105, 列傳18 柳璥. "璥謂俊曰, 公始與璥, 同心擧義, 復政王室, 親如骨肉, 善讒者不能間. 豈圖今日反如是耶. 俊愧謝, 承俊林衍等, 不言而退."

44)『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金俊. "王還國, 欲封侯立府, 下制曰, 叅政金俊, 事我先王, 誅戮權臣, 復政王室, 扶立寡躬, 奉承宗祀, 功業之盛, 夐出千古. (…)"

45) 姜在光, 「1258~1259년 장군 朴希實·趙文柱의 對蒙外交와 對蒙講和」, 『한국중세사연구』 34, 한국중세사학회, 2012, 247면.

46) 같은 글, 251-252면,

47) 鄭修芽, 앞의 글, 1985 ; 앞의 책, 1995, 291-296면 ; 姜在光, 「對蒙外交의 변화와 崔竩政權」, 『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的 對應』, 景仁文化社, 2011, 407면 ; 姜在光, 앞의 글, 2012, 251-252면 ; 한편, 이러한 강화 분위기는 최씨 정권 말기로 갈수록 對蒙和議論者가 득세한 결과이기도 하다. 전쟁이 한창이던 1234년(고종 21)~1250년의 인사발령에서는 대몽강경론자・항몽론자가 두각을 나타냈다. 전쟁 초에 군공을 세운 이들이 특히 고려된 인사였다. 그러나 최씨 정권 말미에 해당하는 1254년~1258년의 인사발령을 보면 대몽화의론자・강화론자가 전면에 대두하며 재추직을 장악하고 있다. 이는 좌주・문생 등으로 명맥을 이어 오던 대몽화의론자・강화론자들이 전시기 침공과 철군을 반복하던 몽골군을 철군시킬 때 그 교섭을 담당하면서 공을 세운 결과였다(姜

만큼, 당시 강화 추진에는 직접 협상자였던 박희실・조문주는 김준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전개하였을 것이다.

D1에 나오는 쥐구멍과 고양이의 비유는 이미 이전부터 고려가 몽골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사용된 바 있다.[48]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몽골군의 철수를 위해 고려의 협상단이 새롭게 내건 노림수는 최의에게 과오를 돌리는 부분이 된다. 즉, 권신으로 군림하던 최씨 집정들이 죽고 왕정이 복고되었으므로, 몽골과의 강화를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무오정변의 명분과 기치가 김준이 사활을 건 외교에도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서사는 이듬해 태자 王倎(후의 원종)이 몽골에 갔을 때 보냈던 표문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D2를 보면, 그동안은 병권을 틀어쥔 권신이 있었기 때문에 몽골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輸忠之職을 다하겠다는 의도로 보낸 표문이기에 위와 같은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정사가 왕에게 돌아갔으므로, '병권을 틀어진 무신이 나와 국가 안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는 점을 외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정치적 수사일지라도, 당시 정적의 제거를 완료하고 무신집정의 권한을 추구해가던 김준이 표문 작성 과정에서 온전히 배제되어 있었을 리가 없다. 적어도 해당 내용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D1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김준이 '무신집정화' 하는 과정임에도 '復政于王' 명분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D1・D2는 단순히 지나칠 지점은 아니라 생각된다.

D3은 김준이 '復政于王' 명분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C2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親유경적 인물들은 모두 하옥하였지만 유경만은 온전히 축출하지 못했다. 바로 정사를 왕실로 되돌렸을 때 함께 했었다는 점을 내세운 유경의 꾸짖음 때문이었다. 이 때 김준이 보인 반응이 주목된다. 단지 유경을 보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경에게 사죄까지 하고 있다. 김준과 유경이 설사 무오정변 이전부터 '骨肉과 같은' 관계였을지라도, 해당 시점의 김준의

在光, 「崔氏政權 내부의 對蒙和議論者」, 앞의 책, 2011, 365-366면).

48) 姜在光, 앞의 글, 2012, 249면.

반응은 비단 그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같은 명분 아래 大義를 함께 했던 이와 정적이 되어야 했던 당시 김준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D4는 원종이 김준의 立府에 대한 의사를 밝히면서 내린 制이다. 이 시점까지도 김준의 가장 큰 공은 정사를 왕실로 되돌린 것[復政王室]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가 해양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復政于王'의 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실제 封侯立府는 2년 뒤인 1265년(원종 6) 10월에 이루어졌다.[49] 김준이 1265년 封侯 이후 1268년에 사망하였음을 고려하면, 그는 정권 후반까지도 의식해야만 하는 기치가 있었다. 즉, 김준은 집권기간 동안 '復政于王'의 명분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무신집정의 길과 '復政于王'의 길은 사실 양립하기 힘들다. 전술했듯이 신분적·정치적 이유로 무신 집정이 되어야만 했고, 결국 그 과정을 밟았다. 하지만 이미 김준은 본인의 주도로 왕실을 향한 기치를 등장시킨 입장이었다. 딜레마에 놓여 있는 김준은, 결국 전대 무신집정이 보유했던 것들을 온전히 자신의 기반으로 삼는데 제한이 생겼다. 김준 집권 이후 '쇠퇴기' 무신정권의 도방 동원 방식은 그 결과였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3. 김준·임연 집권기 도방 동원 방식과 그 함의

1) 최씨 무신 집정기 군사적 기반과 도방 동원

도방은 주지하듯 무신 집정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호위·활용을 위해 창설한 사병집단이다. 물론 도방 구성원의 개별 충성도는 저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도방이라는 집단이 가진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 달라지지는 않는다.[50] 무신 집정에게 있어서 도방은 본인들의 전유물이었으며, 이는 도방이 무신집권기를 통틀어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이다. 도방은 삼별

49) 『高麗史』 권26, 世家26 원종 6년 10월 庚午.

50) 한편, 최충헌 이후 도방 내부의 결속력이 항시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집정을 향해 확고히 존재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 이미 최항에게 도방이 넘어갔을 때 잡음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 崔忠獻 附 沆). 하지만 본고의 분석대상인 통수권(발명권)의 소재 여부 및 동원 방식과는 다소 결이 다른 문제이다.

초[51]와 더불어 대표적인 무신 집정의 군사적 기반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삼별초는 수행한 역할과 형성 과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본래 관군으로 창설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때문에 동원방식에 있어서는 관군의 것을 따른다. 확립되어 있던 최씨 무신 집정들의 군사적 기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먼저 당시 고려시대 관군의 운영구조를 먼저 검토하도록 한다.

> E) 옛 제도[古者]에 兵法을 설치할 때는 發命과 發兵과 掌兵의 차등이 있었습니다. 發命者는 재상이요, 發兵者는 중간에 있는 摠制요, 掌兵者는 명을 받음으로써 행하는 자였습니다. 재상은 임금[君上]의 명으로 稟한 것이 아니면 발명하지 못하고, 총제는 재상의 명이 있지 않으면 발병하지 못하며, 장병자는 총제의 명이 있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52]

E는 조선 초의 사료로, 관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臺省이 고려의 군제가 古制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먼저 兵法의 古制를 언급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군의 운용에 대해 發命·發兵·掌兵의 개념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명은 의사를 담은 命 자체를 내리는 것이며,[53] 발병은 군을 징집·편성하는 것이다.[54] 그리고 장병은 用兵作戰하는 권한이다. E에 따르면 결국 군사 관련 최고위 권한인 發命은 통수권을 가진 국왕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

---

51) 삼별초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들을 참조.
池內宏, 「高麗の三別抄について」, 『史學雜誌』 37-9, 1926 ; 『滿鮮史硏究』 中世篇 3, 東京 : 吉川弘文館, 1963 ; 金庠基,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就하야 (一)·(二)·(完)」, 『震檀學報』 9·10·13, 진단학회, 1938·1939·1941 ; 『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1948 ; 閔丙河, 앞의 책, 1973 ; 『高麗武臣政權硏究』, 成均館大 出版部, 1990 ; 金潤坤, 「三別抄의 對蒙抗戰과 地方郡縣民」, 『東洋文化』 20·21合, 영남대동양문화연구소, 1981 ; 『한국 중세의 역사상』, 영남대 출판부, 2001 ; 金塘澤, 앞의 책, 1983 ; 金塘澤, 앞의 책, 1987 ; 앞의 책, 1999 ; 申安湜, 「高麗中期의 別抄軍」, 『建大史學』 7, 건국대 사학회, 1989 ; 閔賢九, 「蒙古軍·金方慶·三別抄」, 『韓國史市民講座』 8, 一潮閣, 1991 ; 『高麗政治史論』, 고려대 출판부, 2004 ; 김수미, 「고려 무인 정권기의 야별초」, 『高麗武人政權硏究』, 洪承基 外, 서강대 출판부, 1995.

52) 『定宗實錄』 권4, 定宗 2년 4월 辛丑. "古者兵法之設, 有發命發兵掌兵之差. 發命者宰相也, 發兵者居中摠制也, 掌兵者受命以行者也. 宰相非稟君上之命, 不得發命. 摠制非有宰相之命, 不得發遣. 掌兵者非有摠制之命, 不得以行."

53) 諸橋轍次, 1985, 「發命」, 『大漢和辭典』 7, 大修館書店, 1225면.

54) 諸橋轍次, 1985, 「發兵」, 『大漢和辭典』 7, 大修館書店, 1225면.

는 것이고 재상은 그 王命을 이행할 뿐이었다.

그런데 최충헌 집권 이후부터는 집정이 여러 관서의 상위직을 겸임하였고, 또 교정도감 등이 권력기구로 군림해 갔다. 그에 따라 E의 재상·총제가 수행한 역할은 집정이 함께 관장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당시의 관군 동원을 구조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최씨정권기 이후 관군의 동원



최충헌의 경우, 이의민 제거과정에서부터 국왕을 의식하면서 정권을 장악하였다. 정변 당시 관군의 동원도 명종의 발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55] 스스로가 왕위에 오르지 않은 채 명종에게 '太祖正法'을 이루어달라며 봉사 10조를 올리기도 했다.[56] 그리고 최충헌은 통수권을 사유하기보다 연이 있는 인물을 관군 내에 배치하는 식으로 공적인 軍政을 장악하려 하였다.[57] 즉, 최충헌은 관군을 동원할 때 국왕의 권한 자체를 향유한 것이 아니라, ㉠의 '과정'을 형식화하고 사유화하여 군을 활용했다.

이는 최충헌 집권기의 구조가 계승된 최이 집권기 이후에도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관군으로 조직된 삼별초 역시 이러한 구조를 따랐다. 한 예로, 고려는 몽골·왜구와의 전투에서 때때로 야별초를 보내 각 지역을 지원한 바 있다.[58] 이때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 주체가 국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파견에 당시 집정들이 간여되지 않았을 리 없다. 또 무신

55) 金大中, 「崔忠獻의 執權과 京軍」, 『軍史』 6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7, 157·158면.
56) 『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
57) 金大中, 앞의 글, 2007, 160-165면.
58)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23년 8월 己酉·권24, 世家24 高宗 45년 4월 辛丑·권26, 世家26 元宗 6년 7월 丁未.

집정이 직접 관군을 동원하는 듯 서술된 사료들도 나타난다. 모두 ㉠의 '과정'을 집정이 사유화하고, 국왕의 승인은 형식화되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도방은 관군의 질서와는 관련이 없었다. 최충헌은 본인에 의해, 본인을 위해 도방을 창설했기에 명분과 질서에 휘둘려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표 1〉을 보도록 한다.

〈표 1〉 최씨 집정 시기 도방의 동원

시기	집정	도방의 행위	發命 (統帥權)者	전거	비고
1209. 09	최충헌	연회 동원	최충헌	『要』 권14	
1211. 11		최충헌 구출		『史』 권129 崔忠獻	
1229. 10	최우	(사열)	최우	『史』 권129 崔忠獻 附 怡	
1229. 11		사열		『要』 권15	
1234. 10		물자운반		『史』 권129 崔忠獻 附 怡	
1235. 8		출정		『史』 권23	도방원 개인 출정
1249. 11	(최우→) 최항	후계 집정 옹위	(최우→) 최항	『史』 권129 崔忠獻 附 沆	
1256. 3	최항	수비 배치	최항	『史』 권23	
1257. 4	(최항→) 최의	후계 집정 옹위	(최항→) 최의	『史』 권129 崔忠獻 附 竩	

* 『史』는 『高麗史』, 『要』는 『高麗史節要』를 말한다.
** 해당 행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경우 ()를 사용해서 표시하였다.

〈표 1〉은 도방이라는 주체가 명확히 보이면서 그 명을 내린 자가 보이거나, 혹은 통수권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관군과는 달리 최씨 집권기 도방과 관련한 命의 출발점은 무신 집정만이 확인되며, 다른 주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통수권자에게 군의 상태를 점검받고, 그 위상을 드러내는 행위인 사열[59]도 도방은 관군과 달리 집정의 주재 아래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60]

59) 권기현, 「고려시대 閱兵의 시행과 그 의미」, 『軍史硏究』 149, 육군군사연구소, 2020, 36면.
60) 한편 관군을 대상으로 한 사열은 『高麗史』 내에 약 80여 회 등장한다. 이 중 사열 주체가 국왕이 아닌 경우는 13회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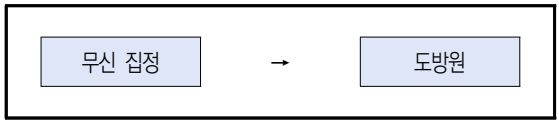
그렇다면 관군의 동원구조와 구분되는 도방의 동원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집정이 즉각적으로 명을 내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 최고위자가 가질 수 있었던 군 관련 권한도 보유하고 있었다. 즉, 무신 집정 외에 다른 발명자는 없었으며, 무신 집정보다 상위권자 역시 존재할 수 없었다. 삼별초가 외부로 파견되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에 반해, 도방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호위를 담당했다. 도방은 집정이 위치한 도읍을 방비하는 데 임시로 동원된 바가 있고, 도방원 개인이 군사를 부여받아 출정한 적이 있었을 뿐 '도방 조직'으로서 외부에 파견된 적이 없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순번	시기	사열 주체	사열 대상	비고
1	1106.11	윤관・오연총	신기군・신보군	
2	1135.1	김부식	서경진압군	
3	1202.12	최충헌	경주반적진압군	
4	1268.12	脫朶兒	일본정벌군	몽골 汗命
5	1271.5	脫朶兒	일본정벌군	몽골 汗命
6	1271.4	전분・윤군정	부위병	
7	1274.1?	忽敦・홍다구・유복형(이상 몽골측 원수부), 김방경	일본정벌군	
8	1280.11	김방경・박구・김주정	일본정벌군	
9	1283.4	김주정	군	王命
10	1374.7	최영	제주정벌군	
11	1388.3	최영	요동정벌군	
12	1391.1	삼군총제부	군	
13	1391.2	삼군총제부	군	

해당 표에서 1・2・7・8・10・11의 사례는 대외정벌・진압・군 파병 등으로 인해 왕명으로 원수부가 구성되거나 그에 준하는 직위들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은 국왕에게 해당 군의 총 관할권을 위임받는다. 그리고 6의 사례는 부위병의 군액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왕명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9의 경우는 왕명에 의한 것임이 사료상에 명시되어 있다. 이상의 사례는 受命에 의해 국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3은 무신집권기에 해당하며, 12・13는 이성계가 都摠制使로서 모든 병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던 것이다. 이 두 부류는 특정인에 의해 병권이 집중되어 있는 특수한 정국에서 나타난 사례에 해당한다. 또 4・5는 元 世祖(忽必烈)가 고려의 일본 정벌 준비를 점검・감독하기 위해 보낸 脫朶兒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역시 보통의 경우는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열의 주체는 통수권자인 국왕이었으며, 다른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 사열도 대부분 국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했다.

〈그림 2〉 최씨정권기 도방의 동원



최씨 무신 집정들은 도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최충헌대 6番으로 운영되었던 것이[61] 최이 집권기에는 내・외의 추가적인 편성[62]이 생겼고, 최항 집권기에 이르러서는 36番까지도 확장되었던 것이다.[63] 이는 도방의 양적 확대를 의미한다.[64] 즉, 최씨 집정들은 관군의 동원절차를 사유화하여 자유롭게 활용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정점이 되는 도방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면서 군사적 기반을 강화했던 셈이다.

2) '復政于王' 명분 등장 이후 도방 동원의 변화

무오정변 이후 여러 가지 '復政于王' 관련 조치들이 이루어졌음은 앞선 장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러한 조치들은 무신 집정의 사적 무력 기구에도 취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자료가 참고된다.

> F1) (고종 45년) 왕이 康安殿에 이어하였다. 백관이 늘어서 하례하기가 처음 즉위한 것 같았다. 의례가 끝나고 나가니 朴松庇・金仁俊은 관복[時服]을 입고서 여러 공신과 좌・우별초・신의군・도방 등을 이끌고 殿庭으로 들어와 늘어서서 절을 올리고 만세를 불렀다. 崔竩의 재산은 몰수하여 차등 있게 나누어주었다.[65]

---

61) 『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

62) 『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 附 沆.
내・외 도방과 관련해서는 종래 최충헌대부터의 도방원을 외도방으로, 자신이 거느렸던 문객을 내도방으로 편성한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金庠基, 앞의 책, 1948, 231면).

63) 『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 附 竩.

64) 이에 대해 번의 수만 늘었을 뿐 도방의 양적 규모가 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柳昌圭, 앞의 글, 1985 ; 앞의 책, 1995). 하지만 번의 확장은 인원수의 확장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듯 하다(金庠基, 앞의 책, 1948 ; 전경숙, 앞의 글, 1997). 그렇다면 최의가 집권한 시점의 도방은 늘어난 番의 수만큼 양적 규모가 상당히 커져있는 셈이다.

F2) (고종 45년) (왕이) 王輪寺에 행차하였는데, 각 번의 도방・야별초・신의군・서방・殿前이 어가를 옹위하여 가자 보는 이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66)

F1은 '復政于王'한 지 3일째 되는 날로, 왕은 무신 집정이 사라진 공간에서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이때 모든 사병들은 국왕을 위한 축하 의례를 행하고 있다. F2는 그로부터 약 보름이 지난 후의 일로, 도방・야별초・신의군・서방・殿前은 그동안 자신들이 모셨던 무신 집정이 아닌 御駕를 옹위하고 있다. 이들은 최씨 무신집정기 권력구조의 요체였다는 점에서 이 행보가 주목된다. 철저하게 개인을 필두로 했던 사병 집단들의 움직임이 국왕을 향하도록 전환된 것이다.67)

F1・F2는 최항・최의에게 권한이 세습되었던 당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68) 그 호위 주체가 국왕일 뿐, 마치 최씨 무신 집정기 통수권자의 궐위가 발생했을 때 사병 집단들이 후계 통수권자를 옹위하여 전면에 등장했던 행보와 닮아있다. 즉, F1・F2는 전대 무신 집정의 권력기구들에 대한 권한이 국왕에게 귀속되었음을 中外에 알리는 '復政于王'의 상징적인 퍼포먼스였다. 이렇듯 무오정변의 주도자들은 국왕을 위한 만세를 주도하고, 전대 권신인 최의의 가산까지 몰수하면서 전대와 다른 시기의 시작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지만, 유경은 도방을 직접 활용하는 모습 대신 일부 무신을 가까이하는 방식으로 무적 기반을 구축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축출되고 김준이 자신을 무신집정화 하면서, 도방의 활동은 다시 확인되기 시작한다. 다음을 통해 살펴본다.

---

65)『高麗史』권24, 世家24 高宗 45년 3월 己卯. "王御康安殿. 百官陳賀如嫡卽位. 禮畢出, 朴松庇金仁俊以時服, 率諸功臣左右別抄神義軍都房等, 入殿庭羅拜, 呼萬歲. 發崔竩家貲, 分給有差."

66)『高麗史』권24, 世家24 高宗 45년 3월 辛卯. "幸王輪寺, 各番都房夜別抄神義軍書房殿前擁駕而行, 觀者感泣."

67) 그 과정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해당 시점 이후 유경이 집권하면서 B1의 정방처럼 사병집단 역시 '형식적인' 국왕으로의 귀속이 진행되었다고 여겨진다. 당시 유경이 보였던 여타 행보들과 함께, 후술하겠지만 도방이 국왕・무신집정에게 마치 '兩屬的'으로 동원되고 있는 행태를 보건대 그러하다.

68)『高麗史』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 附 沆・竩.

G1) (고종 46년) 몽골의 사신[客使]이 외성이 헐어지지 않음을 듣자 말하기를, "외성이 그대로 있으니, 진심으로 항복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 헐어버려야 돌아가겠다." 하였다. 國家에서 귀중한 보물로 뇌물을 주고, 즉시 도방에게 명령하여 외성을 헐게 하였다.[69]

G2) (원종 6년) 또 사수[射士]를 모으고 은항아리를 많이 내어 맞추는 자가 항아리를 취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때에 궁술에 능한 자가 수백이었으나 맞추는 자가 없었다. 오직 한 명이 맞추니 즉시 散員을 제수하였다.[70]

G3) (원종 9년) 이 해에 林衍이 김준을 죽였다. 김준의 아들 金柱가 6번 도방의 모든 군을 모아 항거할 것을 모의하였다.[71]

G1~G3은 김준이 집권한 시기 도방 혹은 사병들과 관련된 사료이다. 먼저 G1은, 태자 王禃(후의 元宗)이 표문을 가지고 원에 입조한 직후의 일이다. 왕전은 몽골의 원수 也速達(余愁達)과 松吉(散吉)에게 물품들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松吉과 왕전은 江都의 성곽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이후 松吉은 周者·陶高 등을 보내어 강도 성곽의 壞城을 감시·독촉하게 했다. 周者는 내성뿐만 아니라 G1과 같이 외성까지 무너트리고자 했다. 이에 도방은 명을 받고 외성의 壞城에 동원되었다.

다만 그 命의 출발이 '國家'로 나타나는 점은 이채롭다. 앞서 〈표 1〉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항시 도방 운영과 관련한 命의 시작점은 무신 집정이었기 때문이다. '復政于王'의 기치가 등장한 이후 도병의 동원 주체로서 '國家'는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주지하듯 '國家'는 특정 私人을 대상으로 한 질서에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

왕조 국가에서 국가의 존속은 왕위의 지속적인 승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때문에 왕위를 잘 승계시킨 국왕은 국가를 안정시킨 공덕이 있다고 평가받았

69)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6년 庚寅. "客使聞外城不壞曰, 外城猶在, 可謂誠服乎. 盡壞乃還. 國家賂以重寶, 卽令都房, 壞外城."
70) 『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金俊. "又募射士, 多出銀罌, 許中者取之. 時能射者以百數, 未有中者. 有一人中之, 卽授散員."
71) 『高麗史』 권106, 列傳19 嚴守安. "是年, 林衍誅俊. 俊子柱聚六番都房諸軍, 謀拒之."

고, 후손 중 다수가 국왕이 되었을 경우 선조가 추앙받기도 했다. 고려의 경우 定宗이 광종에게 왕위를 잘 승계한 것이 宗社를 안정시킨 것으로 평가받거나,[72] 현종이 왕업을 중흥시킨 것으로 여겨진 것[73] 등이 그 사례이다. 또 太子를 국왕 바로 다음에 해당하도록 예우했던 이유도 태자가 왕위 계승을 전제하여 군을 위무하고 국가를 감독하는[撫軍監國] 것을 익히는 자였기 때문이다.[74] 이처럼 국가와 국왕은 불가분의 관계였고, 때문에 '國家'는 무신 집정이 아니라 국왕을 대표로 하는 체계를 전제한다.

김준은 무신 집정이 되었음에도 한번 국왕의 공간으로 이동한 정방을 끝내 자신의 영역으로 가져오지 못했다. 그리고 도방 역시, 적어도 명령 체계상으로는 그러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즉, 형식적으로는 국왕에 의해 도방이 동원될 여지를 남겼다. '復政于王'과 관련한 딜레마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도, 김준은 강제적으로 그 권한을 다시 환수하여 私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컸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김준이 확고한 무신 집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도방의 통수권 보유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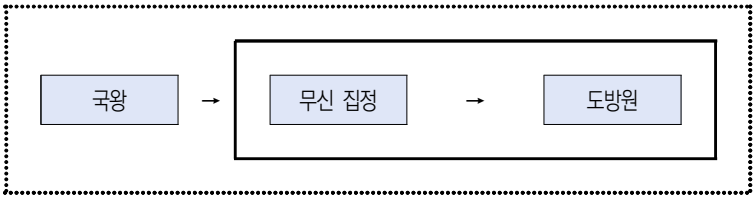
실제 김준은 도방을 자신의 권력기반으로 활용하였다. G2・G3이 그 예이다. G2는 김준이 사사로이 사수들을 모아 그들의 궁술을 시험하는 장면이다. 이는 최이가 도방을 사열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도방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수들은 김준이 제어할 수 있는 집단에 속한 이들일 것이다.[75] G3은 임연이 김준을 제거한 직후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 때 김준의 아들 김주는 도방을 동원하여 임연에 대항하고자 하고 있다. G3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高麗史』 金俊傳에는 김주가 모은 6번 도방이

72) 『高麗史』 권93, 列傳6 崔承老.
73) 『高麗史』 권70, 志24 樂1 雅樂 太廟樂章 顯宗第三室.
74) 『高麗史』 권12, 世家12 睿宗 序.
75) 강재광은 G2를 김준의 삼별초 확충 의도와 연결 지은 바 있다(강재광, 앞의 글, 2013, 259・260면). 당시는 삼별초의 운영체계를 무신 집정이 사유화 하고 있었던 시기라는 점에서 사사로이 궁수를 시험한 해당 사례가 삼별초 확충과 연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를 삼별초라 확언할 수 있는 근거는 나타나지 않기에, 도방에 대한 것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게다가 이와 같은 행보가 단 1회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도방・삼별초 모두에 위와 같은 사열이 행해질 수 있고, 실제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其徒', 즉 '그의 무리'라고 표현되고 있다.[76] 도방이 김준의 권력 기반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77]

여전히 사적인 권력 기반이었던 도방이, 형식적으로나마 '國家'에 의해 동원된 것처럼 나타난다. 이러한 동원 구조를 도식화해보면 〈그림 3〉과 같다. 도방의 기본적인 동원 구조는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았다. 즉, 〈그림 3〉 내의 실선부와 같은 형태로, 결국 〈그림 2〉와 동일하다. 하지만 이 시기 도방은 G1처럼 국왕을 정점으로 한 체제에서 동원된 듯 변화된 형식을 보이기도 했다. 〈그림 3〉의 점선부와 같은, 마치 통수권을 국왕이 쥔 듯한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그림 3〉 최씨정권기 이후 관군의 동원



이는 김준이 명분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김준 개인에게는 나타나서는 안되는 변화였다. 하지만 김준은 F군과 같은 국왕을 향한 상징성 있는 의례도 주도했다. 즉, 도방을 비롯한 사적 집단이 국왕에게 되돌아갔음을 표방한 주요 인물이었던 김준은 국왕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의식해야 했다. 도방의 동원에 대해 〈그림 3〉의 점선부・실선부 형태가 모두 나타났던 것은, '復政于王' 명분의 등장과 무신 집정이 되어야 했던 김준 등이 얽혀 나타난 산물이었다.

---

76) 『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金俊.

77) 강재광은 김준 집권기에는 따로 도방이 편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강재광, 앞의 글, 2013, 224면). 하지만 G3의 사례가 확인되기에 김준 시기에도 도방은 분명히 존재했다. 한편, 김준이 도방을 '새롭게' 편성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최의의 도방 조직이 '復政于王' 되었다가 전체 혹은 그 일부가 김준의 도방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G1은 당시 도방에 관련한 命이 형식적으로는 비단 무신 집정 뿐만 아니라 국왕을 중심으로 한 체계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發命은 통수권을 보유한 이의 권한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 G군의 사례들은 그 권한이 마치 국왕과 무신 집정에게 '兩屬'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국왕이 도방을 자유로이 활용했을 것이라고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다. 실제 해당 시기의 도방은 무신 집정의 기반으로 기능하였고, 이는 G2・G3을 살피면서도 확인하였다. 하지만 확고하게 구축되어있던 전대 최씨 무신 집정 시기에 비해, 그 기반 체제는 형식상으로도 균열이 시작된 모습이다.

그럼 이러한 기류는 비단 김준 집권기에만 한정된 것일까. 이후 임연 집권기에도 그러한 모습이 포착된다. 김준은 약 10여 년을 집권하다가 임연에 의해 제거되었다. 임연 역시 무오정변에 참여하고[78] 김준과 함께 성장해 樞密院副使에 오른 인물이다.[79] 다음은 임연 및 도방과 관련한 사료들이다.

H1) (원종 10년) (임연이) 삼별초와 6번 도방을 毬庭에 집결시켰다. 재상과 의논하여 말하길, "나는 왕실을 위하여 권신을 제거하였다. 왕은 도리어 金鏡 등과 모의하여 나를 죽이고자 했다.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 내가 大事를 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왕을) 먼 섬으로 쫓아 보내고자 한다. 어떠한가?" 라고 하였다. 재추들은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80]

H2) (원종 10년) 임연이 갑옷을 입고 삼별초와 6번 도방을 거느리고 安慶公 王淐의 집에 이르렀다. 문무 백관을 모아 왕창을 받들어 만세를 부르고 본궐로 들어가 왕위에 오르게 했다.[81]

H3) (원종 10년) 임연이 김준의 옛집으로 이사하였다. 王淐이 도방 6번을 보

78)『高麗史節要』권17, 高宗 45년 3월.
79)『高麗史』권130, 列傳43 叛逆4 林衍.
80)『高麗史』권130, 列傳43 叛逆4 林衍. "集三別抄六番都房于毬庭. 與宰相議曰, 我爲王室, 除權臣. 王乃與金鏡等謀, 欲殺我. 不可坐而受戮, 我欲行大事, 不爾竄之海島, 如之何. 宰樞莫敢對."
81)『高麗史』권130, 列傳43 叛逆4 林衍. "衍擐甲, 率三別抄六番都房, 詣安慶公淐第. 會文武百僚, 奉淐呼萬歲, 入本闕, 卽王位."

내어 호위하게 하였다.[82]

임연은 김준을 제거한 뒤,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金鏡・崔璀 등도 제거하였다.[83] 그리고 며칠 뒤, H1과 같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재상들을 겁박하고자 도방을 집결시키고 있다. 임연은 야별초를 동원하여 김주를 제거하면서,[84] 김주가 보유하고 있던 도방을 자신의 세력으로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임연이 내세운 명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연은 자신의 공로에 대해 '왕실을 위해 권신을 제거한 것[我爲王室 除權臣]'이라 언급했다. 그리고 정변의 이유는 이러한 공로가 있음에도 원종이 본인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연의 명분은 고려 왕실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원종만을 향한다. 즉, 임연은 고려왕실의 전복까지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 국왕의 교체만을 꾀했으며, 자신이 무오정변으로 왕실에 기여한 인물이라는 점은 포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 임연이 옹립한 새 국왕이 고종의 2남인 安慶公 王淐이었다는 점도 자신이 고종에게 '復政于王'하는데 기여한 인물이라는 점과 전연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H2에서도 보이듯 안경공 왕창의 집까지 이를 때도 임연은 도방을 불러 모았다. 도방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결국 새로운 국왕인 王淐을 즉위시켰다.[85] 이와 같이 임연은 사적 기반을 자유로이 활용하며 이미 무신 집정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었고, 자신이 옹위

82) 『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林衍. "衍移入金俊舊第. 淐遣都房六番, 衛之."
83) 『高麗史』 권26, 世家26 元宗 10년 6월 辛卯.
84) 『高麗史節要』 권18, 元宗 9년 12월 丁酉.
85) 임연 집권기 원종의 폐위 및 복위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고들을 참조.
金塘澤, 「林衍政權과 高麗의 開京還都」,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上,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刊行委員會 編, 一潮閣, 1994 ; 『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社, 1987 ; 『高麗의 武人政權』, 國學資料院, 1999 ; 崔元榮, 「林衍武人政權의 成立과 崩壞」, 『林衍・林衍政權 研究』, 申虎澈 編, 忠北大學校出版部, 1997 ; 成鳳鉉, 「林衍政權에 관한 研究」, 『湖西史學』 16, 1998 ; 『林衍・林衍政權 研究』, 申虎澈 編, 忠北大學校 出版部, 1997 ; 윤용혁, 「삼별초의 봉기와 항몽정권의 수립」,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 최영호, 「13세기 중엽 趙文柱의 활동과 정치적 성향」, 『한국중세사연구』 16, 2004.

한 왕창에게 교정별감직을 제수받으며 본인이 무신 집정임을 공식화하게 되었다.[86]

그 이후에 일어난 H3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임연은 집정의 위신과 부합하는 집을 원했던 듯[87] 김준의 집으로 이주하였는데, 도방은 그 집을 호위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런데, 이 움직임과 관련한 명의 출발점은 다름아닌 王倡이었다. 그리고 당시 王倡은 임연의 옹립에 의해 분명히 고려 국왕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H3은 형식적으로나마 국왕에 의해 도방이 동원된 사례에 해당한다. 〈그림 3〉의 점선부와 같이 동원된 경우가 임연 집권기에도 확인되는 셈이다.

임연은 김준 정권의 기반을 승계한 무신 집정이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본인이 고려 왕실을 위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때문에 김준 집권기의 도방 운영과 관련한 기조가 이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H1에서 도방 동원 주체로 王倡이 등장한 것은 김준대의 도방 동원 구조가 유지되었다는 점과 함께, 임연 역시 '復政于王'의 기치와 관련한 복합적인 입장에서 자유롭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임연은 김준 정권의 정식 승계자가 아니었던 데다가, 현재 국왕을 폐위시켰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그는 더욱 자신의 행위가 고려 왕실 전체에 대해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며, '復政于王'의 기치를 저버리지 않았음을 표방할 정치적 필요도 있었다. 게다가 이미 김준 집권기에 복정우왕 명분을 의식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국왕에 의해 도방 동원이 이루어졌던 상황이다. 고종의 아들로서 고려 국왕에 오른 王倡이 임연을 위해 도방을 손수 동원해주는 것은 임연 자신이 얽매인 명분에 어긋나지도 않으면서, 그의 집권자로서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동원 방식은 확고한 집권 체제에 가해졌던 형식적 균열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임연이 등창으로 사망하자, 곧바로 임유무가 교정별감직을 승계하였다. 그

86) 『高麗史』 권26, 世家26 元宗 10년 7월 丙午.
87) 김준의 집은 이웃집을 계속해서 헐어가면서 넓힌 결과 뜰의 넓이만 百步에 이르렀다고 한다(『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金俊).

리고 임유무 역시 도방을 동원하여 자신의 집을 호위하고 있다.[88] 이는 임유무가 무신집정으로서 도방을 사유한 결과일 수도, 혹은 제약은 있지만 국왕이 부재한 상황[89]에서 주변의 도움 아래 국왕을 대체하여 도방을 동원한 사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임유무는 집권 기간이 약 3개월여에 불과했으므로 도방과 관련한 사료가 많이 찾아지지는 않는다. 때문에 임유무의 도방 장악 정도를 확실히 나타내거나 국왕이 도방을 움직인 실질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임유무 집정 체제는 임연의 유산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김준 집권 이후 이어진 '復政于王'의 기조 역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1270년 5월, 御史中丞 洪文系・直門下省事 宋松禮 등에 의해 임유무가 주살되면서,[90] 약 100여 년을 이어오던 무신정권이 종말을 고했다.

그리고 정방만이 존속되었을 뿐 여러 무신 집정들의 기반들도 사라졌다. 집정의 전유물이었던 도방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시금 국정을 왕실에게 복고한 상황에서, 그들의 권력 기반을 그대로 두는 것은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방과 같이 개인의 호위를 담당하는 무력적 기반은 더욱 그러했다.

전대에 비해 김준・임연 정권의 기반이 취약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에는 무오정변의 기치였던 '復政于王' 명분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 유경의 주도하에 이미 왕에게 정사를 되돌리는 작업이 일정부분 실현되었고, 후대에 집권한 김준・임연은 이를 거스를 만한 입장이 아니었다. 그들이 권력을 쥘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최씨 무신 정권을 타도하는데 참여한 '復政于王'의 공신이라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과 관계 속에, 도방 역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온전하게 김준・임연에게 귀속되지 않고, 국왕에 의해 동원될 여지를 발생시켰다. 결국 확립되었던 무신 집정의 사적 체제 운영에도 굴곡이 만들어졌던 셈이다. 이러한 김준・임연 집권기의 도방 동원

88) 『高麗史節要』 권19, 元宗 11년 2월.
89) 1269년(원종 10) 11월, 몽골은 王倎을 옹위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종을 몽골에 소환하였다(『高麗史』 권26, 世家26 元宗 10년 11월 壬子). 이로 인해 원종은 이듬해 2월 이미 燕京에 도착한 상태였다(『高麗史』 권27, 世家27 元宗 11년 2월 辛未).
90) 『高麗史』 권26, 世家26 元宗 11년 5월 癸丑.

방식은 '쇠퇴기' 무신 정권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4. 맺음말

도방은 무신 집정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호위·활용을 위해 창설한 사병집단이다. 물론 도방 구성원의 개별 충성도는 저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도방이라는 집단이 가진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무신 집정에게 있어서 도방은 본인들의 전유물이었으며, 이는 도방이 무신집권기를 통틀어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이다.

1258년 무오정변을 겪으면서, 무신정권은 다른 분기를 맞았다. 먼저 전면에 대두한 유경은 각종 조치들을 통해 '復政于王'의 명분을 실현하려 했으며, 자신은 그 안에서 권력을 잡고자 하였다. 기치의 실현 과정에서, 도방은 국왕을 호위하며 전면에 나타났다. 전대 최씨 무신 집권기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무오정변을 주동한 또 다른 인물인 김준은 자신이 무신집정이 되지 않으면 도태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유경을 축출하고 무신 집정이 되었다. 하지만 본인은 '復政于王'의 기치를 통해 성장한 인물로, 본인 역시 그 명분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충분히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게 지위가 부여된 이유 역시 '復政于王'에 공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딜레마에 놓인 김준은 결국 온전히 도방 관련 권한을 환수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는 국왕에 의해 동원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모습은 임연 집권기에도 이어졌다. 임연 역시 무오정변을 통해 성장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국왕 원종을 폐위시키는 행보를 보였던데다, 김준 정권의 정식 승계자가 아니었던 임연은 자신이 옹위한 국왕 왕창을 통해 다시 권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왕이 발명하여 도방이 동원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동원 방식은 확고한 집권 체제에 가해졌던 형식적 균열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결국 무오정변 당시 등장했던 '復政于王'의 명분은 '쇠퇴기'의 무신 집정들

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물론 실제로 당시 국왕이 도방을 자유로이 활용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온전하게 김준·임연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국왕에 의해 발명될 수 있었다. 결국 무신 집정의 사적 체제 운영에도 굴곡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定宗實錄』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제5판)』, 한림대 출판부, 2012.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7, 大修館書店, 1985.

姜在光, 「崔氏家 家奴출신 政治人의 役割과 戊午政變의 性格」, 『韓國史硏究』 127, 한국사연구회, 2004, 1-33면.
_____, 『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的 對應』, 景仁文化社, 2011.
_____, 「1258~1259년 장군 朴希實·趙文柱의 對蒙外交와 對蒙講和」, 『한국중세사연구』 34, 한국중세사학회, 2012, 247·249·251-252면.
_____, 「金俊勢力의 形成과 金俊政權의 三別抄 改編—高麗武人執權期 金俊政權 硏究(一)—」, 『한국중세사연구』 36, 한국중세사학회, 2013, 224·247·259·260면.
_____, 「고려 후기 문신 유경(柳璥)의 정치활동 연구—유경과 무인집정·문신·국왕과의 정치적 관계를 중심으로—」, 『韓國史硏究』 193, 한국사연구회, 2021, 89면.
권기현, 「고려시대 閱兵의 시행과 그 의미」, 『軍史硏究』 149, 육군군사연구소, 2020, 36면.
金塘澤, 「武臣政權時代의 軍制」,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軍史硏究室 編, 陸軍本部, 1983.
_____, 『高麗의 武人政權』, 國學資料院, 1999.
金大中, 「崔竩政權의 武力基盤解體와 沒落」, 『朴性鳳敎授回甲紀念論叢』, 慶熙大史學論叢刊行委員會 編, 慶熙大 出版局, 1987.
_____, 「崔忠獻의 執權과 京軍」, 『軍史』 6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7, 157·158·160-165면.
金庠基, 『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1948.
金潤坤, 『한국 중세의 역사상』, 영남대 출판부, 2001.
金昌賢, 『高麗後期 政房 硏究』, 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98.
閔丙河, 『高麗武臣政權硏究』, 成均館大 出版部, 1990.
閔賢九, 「蒙古軍·金方慶·三別抄」, 『韓國史市民講座』 8, 一潮閣, 1991.
_____, 『高麗政治史論』, 고려대 출판부, 2004.
朴龍雲, 『高麗時代 中樞院 硏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院, 2001.
_____, 『(수정·증보판)고려시대사』, 일지사, 2008.
申安湜, 「高麗中期의 別抄軍」, 『建大史學』 7, 건국대 사학회, 1989, 61-88면.
申虎澈 編, 『林衍·林衍政權 硏究』, 忠北大學校 出版部, 1997.
邊太燮, 『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 1971.
柳昌圭, 「사병의 형성과 도방」, 『(신편)한국사』 18, 국사편찬위원회 편, 국사편찬위원회, 1993.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李相國, 「고려~조선초 공·사전의 개념과 王土思想」, 『大東文化硏究』 85, 대동문화연구원, 2014, 501-507면.
전경숙, 「高麗 崔氏執權期의 都房」, 『韓國學硏究』 7, 숙명여대 한국학연구소, 1997, 129-172면.

鄭修芽,「金俊勢力의 形成과 그 向背 : 최씨무인정권의 붕괴와 관련하여」,『東亞硏究』6, 동아연구소, 1985, 401-440면.
최영호,「13세기 중엽 趙文柱의 활동과 정치적 성향」,『한국중세사연구』16, 한국중세사학회, 2004, 107-133면.
許興植,「1292년 尙書都官貼의 分析(上)」,『韓國學報』27, 일지사, 1982, 20면.
洪承基,『高麗貴族社會와 奴婢』, 一潮閣, 1983.
洪承基 外,『高麗武人政權硏究』, 서강대 출판부, 1995.
旗田巍,『古代東アジア史論集』上, 東京 : 吉川弘文館, 1978.
池內宏,『滿鮮史硏究』中世篇 3, 東京 : 吉川弘文館, 1937.

【Abstract】

The emergence of the cause of “Bring political affairs back to the King (復政于王)” and the change of Dobang (都房)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regime in the Goryeo Dynasty

Hong, Min-Ho*

Dobang (都房) is a private group created by the military governor for their private escort and utilization. For the military regime, Dobang was their exclusive property, and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Dobang was able to survive throughout this period.

Kim Jun (金俊), one of the figures who led Muojeongbyun (戊午政變), was in a position that he could be eliminated if he did not become the highest authority. Thus, he ousted YuKyeong (柳璥) and became a military governor. However, he was a person who grew up through the banner of “Bring political affairs back to the king (復政于王)”, and he was fully aware of it. Kim Jun, who is in a dilemma between military governor and the cause of "Bring political affairs back to the king (復政于王)", eventually failed to fully regain his authority related to the Dobang, leaving room for formal mobilization by the king.

This aspect continued even when Im Yeon (林衍) took power. It was a formal crack that was inflicted on the firm system of the former military governor. In the end, the justification of "Bring political affairs back to the king (復政于王)," which appeared during the Muojeongbyun, continues to affect the military governor during the decline. Of course, it is not thought that the king at the time would have used Dobang freely, but at least formally, it was not entirely attributed to Kim Jun and Im Yeon and could be mobilized by the king. Eventually, a curve was created in the operation of the private system of the military governor.

Keywords: Bring political affairs back to the king (復政于王), Dobang (都房), Kim Jun (金俊), Im Yeon (林衍), The Right to exercise supreme command.

* Ph.D. Candidate, Dep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

접수일: 2021.12.30. ‖ 심사일: 2022.01.11. ‖ 게재확정일: 2022.02.14.